언더라이터 자격시험 참고자료

AKLU 과정

STEP • • • 8

보험세제 및 재무이론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STEP-8 보험세제 및 재무이론 • 목차

보험세제

007 제1장 과세제도의 개요
007 1. 법인세
010 2. 소득세
013 3. 상속·증여세
016 4. 교육세

018 제2장 개인보험계약에 대한 세제
018 1. 세제혜택 부여의 의의
019 2.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021 3.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022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027 5.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029 제3장 단체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
029 1. 단체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030 2.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납입
031 3.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산입

033 제4장 상속·증여관련 보험세제
033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034 2. 금융재산 상속공제
036 3.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
038 4. 장애인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의 증여세 비과세

040 제5장 보험회사 관련 세제
040 1.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042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044 3.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결정
045 4. 생명보험회사의 법인세 계산 사례

046 제6장 근로소득자와 세금
046 1. 근로소득의 범위
048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049 3.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056 4. 소득공제 종합한도
056 5. 근로소득 세액의 계산
057 6. 세액공제
061 7.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062 8.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063 제7장 기타 생활세제
063 1. 보험설계사와 세금
065 2. 금융소득자와 세금
067 3. 연금소득자와 세금
072 4. 근로장려금 제도
074 5. 자녀장려금 제도

076 제8장 납세자의 권리
076 1. 납세자 권리헌장
084 2. 과세전 적부심사
086 3. 조세구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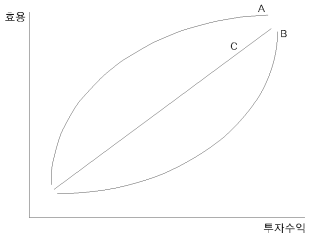
재무이론

089 제9장 재무관리 기초
089 1. 재무관리의 의의와 목표
092 2. 주주 부의 극대화와 대리인문제

093 제10장 화폐의 시간가치
093 1. 시간가치 개념의 필요성
094 2.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096 제11장 투자결정
096 1. 자본예산
096 2. 현금흐름의 추정
100 3.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현금흐름
101 4.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108 제12장 자본시장이론
108 1. 수익률과 위험
110 2. 투자수익과 효용
111 3. 포트폴리오



115 4. 효율적 프론티어
116 5.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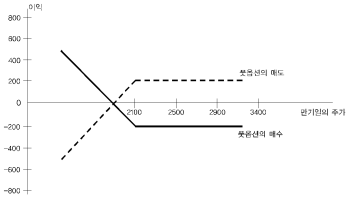
122 제13장 자산평가
122 1. 채권의 평가
127 2. 주식의 평가
132 3. 포트폴리오 평가
136 4. 옵션

140 제14장 자본조달
140 1. 자본비용
143 2. 자본구조

150 제15장 재무제표 분석
150 1. 재무제표
153 2. 재무비율
157 3. 재무비율의 평가

158 제16장 기업합병
158 1. 기업의 인수 및 합병
159 2. 기업 지배권
162 3. 기업합병의 목적
164 4. 기업합병의 재무분석

169 제17장 국제재무관리
169 1. 국제재무관리의 의의
169 2. 환위험
172 3. 환율결정이론



보험세제편

제 1 장 과세제도의 개요

제 2 장 개인보험계약에 대한 세제

제 3 장 단체보험계약에 대한 세제

제 4 장 상속 · 증여관련 보험세제

제 5 장 보험회사 관련 세제

제 6 장 근로소득자와 세금

제 7 장 기타 생활세제

제 8 장 납세자의 권리

제 1 장 과세제도의 개요

1.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경제적 활동과정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함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인 것이며, 법인소득세라고도 부른다.

최초의 법인세는 1916년 8월에 실시되었는데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제1종 소득으로 분류되었고, 해방이후 1949년 11월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법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징수액도 괄목할만한 증가를 거듭해 왔는데 법인세 징수액은 1982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급증하였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및 청산소득의 4가지가 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아래의 ① 및 ②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순자산증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이하 '세무조정'이라 한다)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한다.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한다.

③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2014.12.23)되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며, 동 적용대상법인의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하 '미환류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 합병(분할)에 의하여 소멸하는 과정에서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의 종류]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총액 - 손금총액)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및 별장,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배당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	해산으로 인한 소멸시 청산소득
세 율	과세표준 / 세율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200억원 초과 / 22%	10% (미등기는 40%)	1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동일
신고·납부 기 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신고·납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통상적으로 법인세라고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말하는데,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세무조정은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사유는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재무회계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세무회계간 차이에서 발생한다. 양 회계간 차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로 손익의 귀속연도에 대한 인식기준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정하며, 회계는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익금 및 손금은 수익 및 비용과 일치하지 않게 되며, 이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세무조정이다.

[세무조정 개괄]

결산서상 내용	세무조정*	법인세법의 내용
수 익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익금총액
비 용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총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익금(손금)산입 : 결산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금액에 가산(차감)
* 익금(손금)불산입 : 결산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소득금액에 차감(가산)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다.

[법인세 산출 흐름도]

익금총액 − 손금총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세율 = 산출세액	(±)	(−)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 세액

2.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준말로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인 1949년 7월 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비되었다. 1994년 12월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어 지금의 소득세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소득세의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정소득(퇴직・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한다.

① 원칙 : 종합과세

소득의 원천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6가지가 해당한다.

개인적 사정의 고려, 누진세율의 적용 등에 따라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다만, 징세 및 납세상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진신고의 누락 등에 따른 탈세의 위험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② 예외 :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는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및 세율을 달리하여 각각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 즉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해당한다.

분리과세는 소득을 귀속자별,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납세 및 징수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점으로 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해당한다.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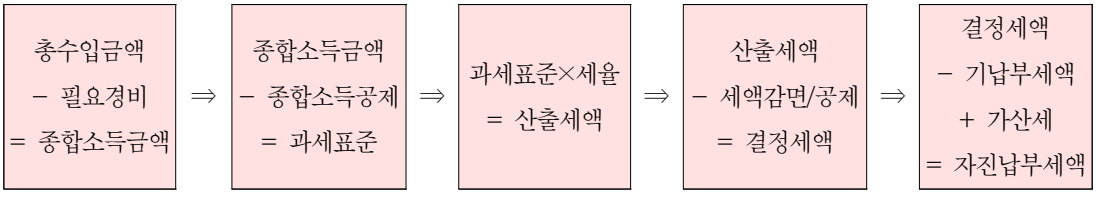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연금소득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류과세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양도소득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부나 동거가족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개인단위로 과세한다. 종전에는 자산소득에 대해서 부부단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즉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산출 흐름도]



일단 개별 소득별로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개별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여기에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으며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뉘어 진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의 6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 5,000만원 초과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38%
5억원 초과	1억 7,0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0%

당초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였으나, 공평과세 차원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부담 강화를 위하여 과세표준 5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하였다.

3. 상속 · 증여세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증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제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1950년 3월에 제정된 상속세법은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 11월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하였으며, 1996년 12월에 이루어진 상속세법 전면개정에서는 법률의 제명을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하였다.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에 따라 제정 이후 변경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는 등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상속이라는 개념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뿐만 아니라 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순위]

①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②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③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내려간 혈족)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의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산출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의제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공제액 − 과세가액 불산입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차감납부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부과하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이러한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으로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정한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각각 별도로 과세한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한 증여자로 취급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더라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수증자가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동일한 증여자가 시차를 두어 재산을 분산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의 누진부담 회피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세 산출 흐름도]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비과세 재산가액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과세가액 불산입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차감납부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과세표준 − 1억원) ×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30%

4.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 공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수입할인료, 위탁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대여료,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및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 공제)는 아래 ①에서 ②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보험료, 수재보험료,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②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출재보험료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
-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의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분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교육세는 당초 분기별로 과세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이 부과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도 법인세법상의 수익귀속시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라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중한 조세협력부담이 발생하였고, 이익과 손실이 다른 분기에 발생하는 경우 같은 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이 달라 손실을 차감할 수 없게 되는 과세 불평등이 초래되어 과세기간을 사업연도(과세기간)로 변경한 것이다.

제 2 장 개인보험계약에 대한 세제

1. 세제혜택 부여의 의의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국민 개개인의 3층 보장 완성을 통한 사회복지국가의 실현 및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자금 조달을 위한 저축유인책으로서의 기능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가. 사회보장기능 보완 및 사회복지국가의 실현

보험은 '사고나 질병시 본인의 의료비 보장',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의 생활 보장' 등 각종 생존 및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다양한 위험보장을 감당하기에 재정한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험의 순기능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및 급속한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준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개인의 미래보장을 완성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국가는 이러한 보험의 순기능을 인정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나. 장기 산업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최근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감소추세로 저축을 통한 경제발전자금 조달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은 최근까지도 저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성격이 장기성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및 국가의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한 투자에 적합하다. 따라서 저축을 통한 장기자금 조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보험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2.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납입보험료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자란 사장, 임원 및 직원 등으로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대상의 계약요건은 다음과 같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계약요건]

구 분	공 제 요 건
계약자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 배우자, 기타 가족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사람)
대상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저축성보험은 제외)

보장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중 해지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미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징되지 않는다.

그리고 2001년부터 생명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복지지원과 보장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보장성보험 보험료 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계약요건]

구 분	공 제 요 건
계 약 자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대상보험	보장성보험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상품을 개발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처음이다. 장애인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외에도 그 장해상태와 경과에 따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쳐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험료가 일반인에 비해 높게 형성될 수 있다.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대상]

납입자	피보험자	연간소득금액	연령	세액공제
본인	부모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가능
본인	배우자	100만원 이하	나이 상관없음	가능
본인	자녀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가능
본인	형제자매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가능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액]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15%
(연간 100만원 한도) (연간 1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사례]

◦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약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이 아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 근로자가 배우자(장애인)를 피보험자로 일반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
⇨ 27만원 세액공제 가능(12만원 + 15만원)

◦ 근로자(장애인)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보장성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부
⇨ 15만원 세액공제 가능, 일반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은 불가능

◦ 일시 납입한 보험료
⇨ 보험계약기간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얼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17년 5월에 일시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월별로 안분계산하지 않음)

◦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입한 연도에 공제 가능

3.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개인들의 소득 형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의 가입 유도를 위하여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납입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공평과세 측면에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예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12%)
0	700	7700(= 0 + 700)	84만원
200	500	700(= 200+ 500)	84만원
500	200	600(= 400 + 200)	72만원
700	0	400(= 400 + 0)	48만원

* 총급여액이 8천만원인 근로소득자로 가정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산출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제외)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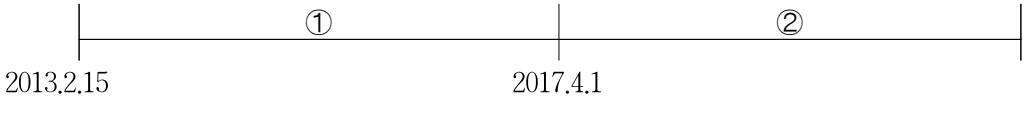
통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래의 ①부터 ③까지의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다만, ②와 ③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

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아래의 ②와 ③은 제외)의 보험료 합계액]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일시납 저축성보험)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2억원
-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1억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한도계산 방법]

※ 사례 예시 : 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일시납 계약 체결시



Case1 :	2억원	1억원
Case2 :	1억원	1억원
Case3 :	0.5억원	0.5억원
Case4 :	0원	2억원
Case5 :	0원	1억원

☞ 2013.2.15.부터 2017.3.31.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은 2억원, 2017.4.1.부터 체결한 보험계약은 1억원(다만, 2017.3.31.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의 한도를 포함)

※ 각 계약별 과세여부 판단

Case1 :	비과세 계약	과세 계약
Case2 :	비과세 계약	과세 계약
Case3 :	비과세 계약	비과세 계약

* Case2, Case3의 ①기간 계약에 대해서 1억원까지 추가납입은 가능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상의 기본보험료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합계액을 의미한다.

-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 :

$$\frac{\text{해당연도의 납입보험료의 합}}{\text{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leqq 150\text{만원}$$

-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예시: 기본보험료 100만원 12개월 납입, 200만원 추가납입(총 1,400만원)시 비과세)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는 포함

또한 월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을 의미)은 제외한다.

-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 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을 것

③ 다음의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 [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미포함] 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 3

[저축성보험을 과세계약으로 선택한 경우의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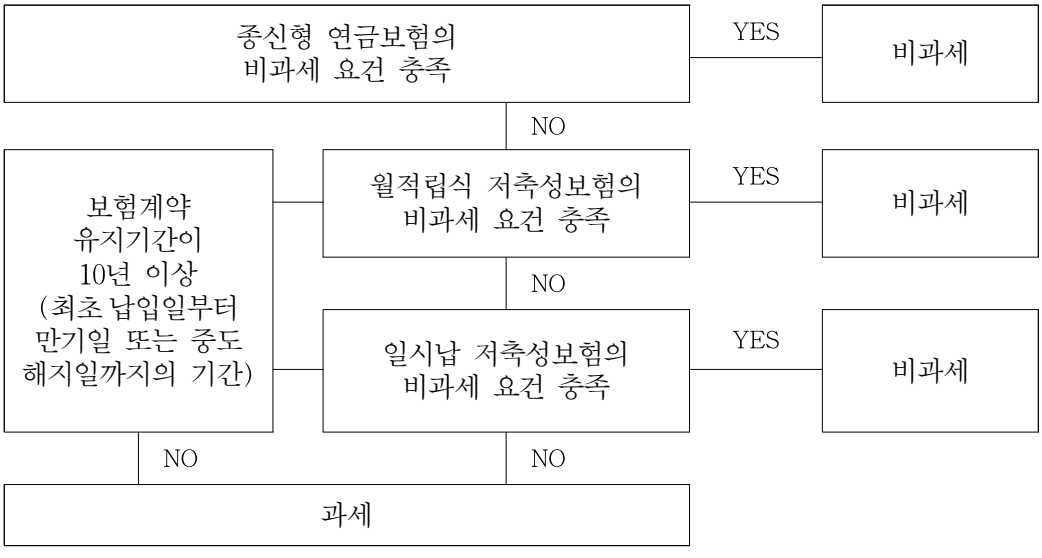
☞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가입)시점에 해당 보험계약을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계약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납입한도에 미포함

☞ 보험계약 체결(가입) 시점 비과세 계약으로 선택하였으나, 계약유지 기간 중에 과세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함, 또한 과세계약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납입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과세계약을 비과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처리방법]

☞ 저축성 보험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점에 다음의 순서대로 과세여부 확인



저축성보험이 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만기 또는 해지시점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또한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명의변경 등을 통한 과세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납 또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전의 보험계약(2013.2.15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즉, 그 변경일부터 해당 보험계약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일까지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일 것'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사유]

①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5.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000만원 이하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을 의미한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015년 가입시 61세, 2016년 가입시 62세, 2017년 가입시 63세, 2018년 가입시 64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여기에서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 등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보험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 등에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으로 표시하며, 일몰이 도래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재설계한 것이다.

이는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여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기존(2015.1.1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은 가입시의 과세특례(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비과세)를 유지하되 일몰 종료후 만기연장,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기 전과 후의 비교]

통합 전	통합 후
◈ 생계형 저축(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3천만원 한도 –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비과세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5천만원 한도)
◈ 세금우대종합저축(9% 분리과세) – 만 20세 이상 거주자(1천만원 한도) –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3천만원 한도)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로 설정
※ 적용기한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적용기한 :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 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장 단체보험계약에 대한 세제

1. 단체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단체보장성보험은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업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장성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되어, 회사는 손금으로 인정받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않는 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은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회사가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험료로 부담하는 경우,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회사는 손금으로 인정받고, 종업원은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연 7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일반적인 단체보장성보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단체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 요건]

-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할 것
-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할 것
-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일 것
-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일 것

[단체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 내용]

구 분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일반적인 단체보장성보험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
회 사	전액 손금(비용)인정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	전액 손금(비용)인정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

2.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납입

최근 회사에서는 임직원에게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보장 및 목적자금 마련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설정 방법에 따라 세무처리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가입 유형별 세무처리]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계약자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원 또는 종업원	임원	종업원
수익자	법인	임원	종업원
납입보험료의 세무회계처리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처리 나머지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급여지급기준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인정
보험료의 근로소득여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소득(인정상여)에 해당	근로소득에 해당

*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됨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사례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사례2〉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사례3〉

법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3.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산입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원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의 복지제도를 말한다.

1961년 법정 강제적 형태로 도입된 기업복지제도인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실질적인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다.

둘째, 사내유보 위주의 퇴직금 제도를 사외유보 위주의 퇴직금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연금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수급할 있도록 제도화하여 안정적 노후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금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로, 퇴직시 DB운용사업자와 회사가 각각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DC형은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로, 퇴직시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되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지연금제도를 말한다.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로 구분되며,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기업형 IRP를 도입한 경우 확정기여형(DC형) 제도를 도입한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하게 된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받은 퇴직금을 저축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계좌로서 직장이전으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노후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유형별 세법상 처리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포함)
회사 납입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 인정	사용인(직원) 납입분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 임원 납입분은 퇴직시까지 부담한 보험료 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근로자 추가납입분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5% 세액공제

제 4 장 상속 · 증여관련 보험세제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 공평과세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 또는 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 인재, 화재, 교통사고, 질병, 사망 등 갖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제도가 보험이다.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계약자)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속인(수익자)이 지정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는 포함된다.

이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접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본인(자녀)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 즉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납부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text{보험금 총 합계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text{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사례) 다음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전보험씨의 아버지 / 보험수익자 : 전보험씨
- 납입된 총보험료 1천만원 중 전보험씨의 아버지가 8백만원 납입
- 전보험씨의 아버지 사망으로 받은 생명보험금은 5천만원

• (풀이)

$$= 50{,}000{,}000 \times \frac{8{,}000{,}000}{10{,}000{,}000} = 40{,}000{,}000$$

한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접 부모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계산할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해당 보험료에 충당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

부동산과 같은 비화폐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그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된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는 재산의 노출이 쉽게 되고 있으며, 예금 등 그 금융재산의 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즉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 등의 평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금융재산은 100%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간 평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라 한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보유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출금은 전액 채무공제받고, 주식, 예금 등은 금융재산으로서 20% 공제를 받게 되어 2중으로 공제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인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공제를 한다.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부금 및 출자금, 예탁금,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및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것이며, 금융부채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된 것을 말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순금융재산 (=금융재산 - 금융채무)	공제금액
2천만원 이하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 × 20% (2억원 한도)

▸ (사례) 부모인 전보험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외아들 전생명씨는 보험금으로 5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전보험씨는 보험금 이외에도 예금 1억원, 주택담보대출 2천만원이 있었다. 이 경우 전생명씨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은 얼마인가?

• (풀이) 순금융재산 = 5천만원(보험금) + 1억원(예금) - 2천만원(주택담보대출) = 1억 3천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 1억 3천만원 × 20% = 2천 6백만원

이 경우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한다. 여기서 최대주주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포함)를 말하는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금융재산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보험기간의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서로 다르다면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상당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그동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였다. 이 경우에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받는 자금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2003년부터는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2004년부터는 과세대상을 금전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으로 확대하였다.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해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손상된 신체의 복원에 소요된 실비정산성격의 보험금이므로 그 실질이 치료비 등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 보험금 수령인이 된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상당액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 총액)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상당액 × (보험금 수령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 ÷ 납부한 보험료 총액)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때가 되며,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납부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가 된다.

다만, 즉시연금보험으로 연금개시 전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는 보험계약 변경 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 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4. 장애인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의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이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한다.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개시일을 보험사고일로 보며,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을 종신정기금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도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종신정기금 평가규정]

-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정기적으로 사망시까지 금전 기타의 물건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종신정기금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절사) 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신정기금 평가액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유형]

유형	보험료 납입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과세여부
1	부	부	부	자녀	부사망	상속세
2	부	부	모	자녀	모사망	증여세
3	부	자녀	부	자녀	부사망	상속세
4	자녀	자녀	부 · 모	자녀	부 · 모사망	과세안됨
5	부 · 모	부 · 모 · 자녀	부 · 모 · 자녀	자녀	연금지급 개시	증여세
6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연금지급 개시	증여세
7	자녀*	자녀	부 · 모	자녀	부 · 모사망	상속세

* 보험계약상 보험료 납입자는 자녀이나,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 납입시

제 5 장 보험회사 관련 세제

1.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중 일정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회사가 장래의 보험사고의 지출에 대한 준비로서 법인내부에 유보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각의 금액을 합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
③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통상 ①은 보험료(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해당되며, ②는 지급준비금 그리고 ③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운영결과(사망률, 이자율, 경비율 등의 이익)에 따른 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이 해당된다.

법인세법 및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규정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성격만을 가진 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적립방법 및 적립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승인한 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보험회사 회계규정 등에 따르고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만 해당)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보험 종목별 적립 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책임준비금의 구성 및 개념설명]

-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준비금 및 재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토록 하고 있다.

① (보험료적립금)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②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지급준비금)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④ (계약자배당준비금)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

⑥ (배당보험손실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

⑦ (재보험료적립금) 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 수재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

⑧ (보증준비금)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나 세무회계 모두 대손금을 비용항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손상회계 측면에서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규정된 대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그 대손처리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소득의 임의적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손금은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결산에 계상(결산조정)하거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산입(신고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이 결산서에 대손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매출채권, 금융기관채권으로 감독기관장이 대손을 인정한 채권, 채무자의 파산 등이 있다.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이 결산서에 대손처리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당기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차기 이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이 있다.

당기 중에 대손이 확정된 대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법인에 먼저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있을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직접 손비항목으로 처리한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 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로 모든 법인은 채권잔액의 1% 상당액과 대손실적률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적립기준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전기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환입하고 다시 설정하는 총액법에 따른다.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②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전기 이전에 이미 설정하여 당기에 환입되어야 할 대손충당금이 당기에 새로이 설정할 대손충당금 금액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은 일시에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이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3.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결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이를 통칭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 라고 한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려는 법인세법 특유의 개념으로서 기업회계의 실현주의 또는 발생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기업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우선 적용하고 기업회계는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확정상태를 구체적인 요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정한 채권 또는 채무가 성립할 것
② 당해 채권 또는 채무에 근거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 또는 권리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것
③ 채권 및 채무의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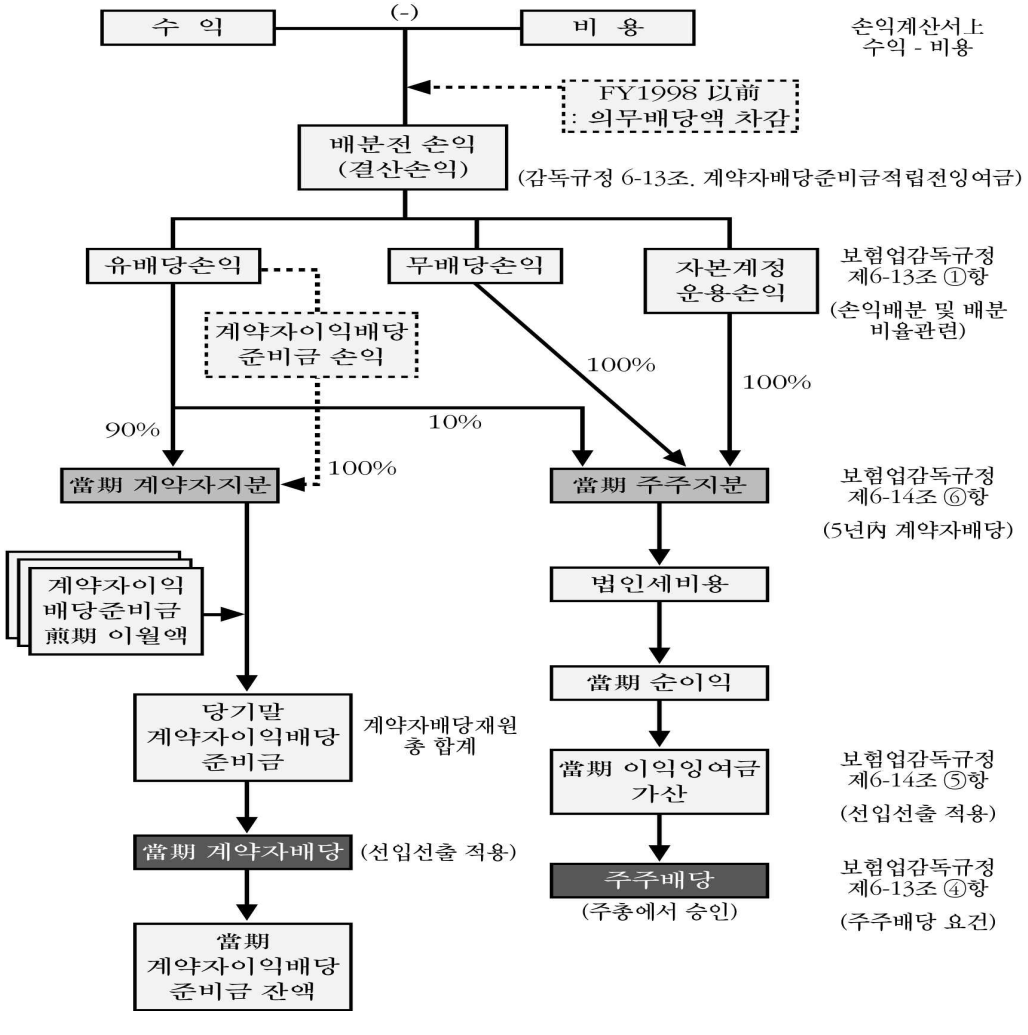
보험료의 귀속 사업연도는 보험료가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단, 선수 보험료는 제외). 결산을 위하여 귀속사업연도를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또한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이자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선수입 이자를 제외하며, 미수이자를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한다.

4. 생명보험회사의 법인세 계산사례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이나 제조업과 달리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을 계약자지분과(90%)과 주주지분(10%)으로 구분하에 주주지분(유배당손익의 10%+무배당손익+자본계정운용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 처리 흐름도]



제 6 장 근로소득자와 세금

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비독립성, 종속성으로 보통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나, 회사의 이사나 감사와 같이 위임계약에 준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과 같이 공법상의 근로관계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및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과의 구분이 필요하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①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않는 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받는 보험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③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④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은 경우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차량제공 대신 출·퇴근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⑤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위의 근로소득 중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만큼 특정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과세소득 예시]

비과세 소득	비과세 내용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직전연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광산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 등
국외근로소득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급자의 원천징수를 통하여 세원이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하여 과세상 우대를 하고 있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와 특별 소득·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다시 세액의 결정단계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별도로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개별 근로자가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근로소득금액 계산사례]
월급여 200만원, 상여 300만원, 자녀학자금 60만원, 실비변상적인 급여 2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풀이)
(1) 총급여액 계산(비과세소득 제외) = 200만원 × 12월 + 300만원 + 60만원 = 2,760만원
(2)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 750만원 + (2,760만원 − 1,500만원) × 15% = 939만원
(3) 근로소득금액 = 2,760만원 − 939만원 = 1,821만원

3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근로소득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등)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로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납세의무자의 특수한 인적사항을 고려한 추가공제가 있다.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의 차별을 두어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기본공제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 상 자	공 제 요 건
근로자 본인	별도의 공제요건이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제한없음

장애인의 경우 연령 요건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①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③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기본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에 의하며, 12월 31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계산사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풀이)
(1)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1) + 배우자(1) + 자녀(3) + 직계존속(2) = 7명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2) 기본공제 금액 = 7명 × 150만원 = 1,0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요 건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상)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한부모공제
공 제 금 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①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②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③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공제
-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 부양가족은 해당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④ (한부모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계산사례]
근로자의 자녀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풀이)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나.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연금보험료 공제	공 제 금 액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 액 공 제

다. 특별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특별 소득공제로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적용 사례

◦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

◦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참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당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②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자금 공제의 대상과 공제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자금공제액 : min(①, ②)

① min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은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액 + 국민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 × 40%
- ㉡은 한도액 : 연 300만원

② 한도액 : 연 500만원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금액을 공제한도로 적용한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 1,800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 1,500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 300만원

라. 그 밖의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기타 소득공제]

구분	공제한도	공 제 금 액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근로소득금액별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 근로소득금액별 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투자조합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15백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총급여액별 한도 + 100만원 (전통시장) + 100만원 (대중교통)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 총급여액별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 [300만원, 총급여 20%]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17년말까지 30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4. 소득공제 종합한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30%, 50%, 100% 제외)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④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 근로소득 세액의 계산

근로소득 산출세액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 5,000만원 초과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38%
5억원 초과	1억 7,0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0%

6.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차감한다.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한도)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74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50만원~66만원

나.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수		세 액 공 제 금 액
1명	⇨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세액공제액 : min(①, ②) ×12%
① min (연금저축계좌납입액, 연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② 연 7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액 : min(①, ②) ×12%
① min (연금저축계좌납입액, 연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② 연 700만원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제외한다.

라.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표준세액공제라고 한다.

[특별세액공제 요약]

세액공제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료비	㉮ 본인·장애인·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인공수정 포함)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 한도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15% (20%) ㉯ 15%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전 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사이버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등)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전 액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0/110 (10만원 이하) 15%(25%) 10만원 초과 (3천만원 초과)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 + 지정 15%(30%)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기타	월세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10%

[근로소득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액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국민연금 등)
(–)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0%, 6단계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7.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가.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월의 월급을 10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의 연간 급여총액(월급여×12)에서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월 단위로 납부할 세액을 정리한 표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소득자 각각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번거로운 계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의 크기와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간이세액표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해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일인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다. 다만,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

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 포함)는 근로기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법에 정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본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액을 지급할 때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인적공제, 특별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text{원천징수세액} = [\ (\text{일급여액} - \underbrace{\text{근로소득공제}}_{\text{1일 10만원}}) \times \underbrace{\text{세율}}_{6\%}\] - \underbrace{\text{근로소득세액공제}}_{\text{산출세액}\times 55\%}$$

다. 국외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종합과세된다. 다만,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원천징수세액은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그 세액의 10%)를 한 금액으로 한다.

8.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구 분	수 입 시 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제 7 장 기타 생활세제

1. 보험설계사와 세금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이다.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의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보험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일인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설계사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또한 연말정산시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보험회사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분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소득공제	기본공제	○	○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
	보험료공제	○	×
	주택자금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세액공제	자녀세액 공제	○	○
	연금계좌세액공제	○	○
	보험료세액공제	○	×
	의료비세액공제	○	×
	교육비세액공제	○	×
	기부금세액공제	○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7만원

한편, 보험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보험설계사에게 매월 모집수당 등을 지급할 때 3%(지방소득세 0.3%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금융소득자와 세금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자소득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등이 있다. 배당소득에는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 있다.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2002.8.29)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도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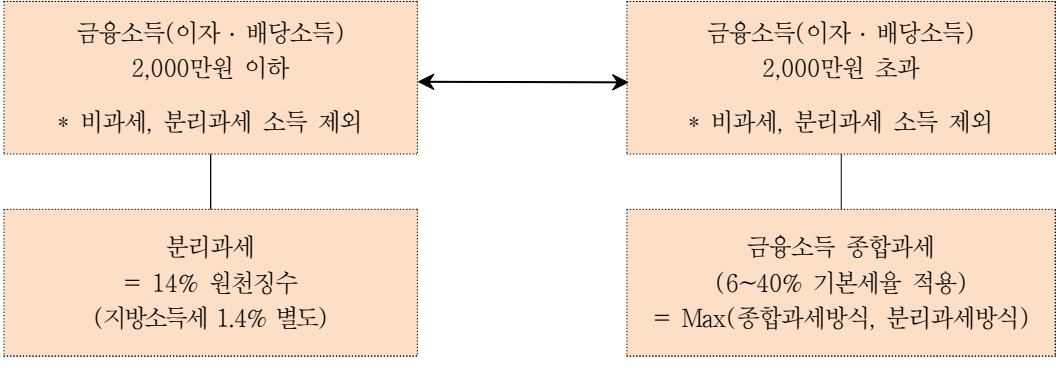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일정요건을 충족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2015년까지 가입한 재형저축의 이자·배당 •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등 법에 정한 자가 1명당 저축원금 5,000만원 이하인 비과세 종합저축에 2019년까지 가입한 경우 그 저축의 이자·배당 • 2017년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 (2012.12.31.이전 가입분)	•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배당 •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채권의 이자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 2012.12.31까지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 – 2013.1.1 이후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 • 2014.12.31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한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4%의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1.4% 별도)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 계산시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국내 금융소득이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국외 금융소득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연금소득자와 세금

연금이란 질병 · 노령 · 사망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매년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에는 연금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였으며 국민연금 또는 연금계좌 납입액 등에 소득 ·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동안 비과세 되어 왔던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금소득을 아래와 같이 과세소득으로 전환하였다.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의미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다음의 금액을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이하 사적연금소득이라 한다.)
 - 이연퇴직소득(퇴직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

여기에서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연금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를 납입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 연간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추가납입 불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2%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인출단계에서 연금수령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 하거나,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계좌의 인출요건]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최소납입기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체된 금액은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본다.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되는 경우
 - 다만, 연금계좌의 연금보험료 납입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
- 2013.3.1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3.1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총연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되는 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 수령액을 말한다.

비과세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 등이 있다.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 총연금액이 4,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한도액인 900만원이 된다.

연금소득은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고, 연금수령자는 추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적연금소득은 매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적연금소득은 지급액에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있거나,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td><td>①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table><tr><th>나이(연금수령일 현재)</th><th>세 율</th></tr><tr><td>70세 미만</td><td>5%</td></tr><tr><td>70세 이상 80세 미만</td><td>4%</td></tr><tr><td>80세 이상</td><td>3%</td></tr></table>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td></tr>
<tr><td>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td><td>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원천징수세율 × 70%
☞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때의 세액에 비해 30%를 경감하여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임</td></tr>
</table>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요약]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납입연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th><th colspan="2">수령연도의 소득구분</th></tr>
<tr><th>연금수령시</th><th>연금외수령시</th></tr>
<tr><td colspan="2">공적연금</td><td>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td><td>연금소득</td><td>퇴직소득</td></tr>
<tr><td rowspan="2">사적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금액)</td><td>이연퇴직소득</td><td>–</td><td rowspan="2">연금소득</td><td>퇴직소득</td></tr>
<tr><td>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td><td>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추가적으로 300만원 가능)
※총급여 1억 2,0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추가적으로 400만원 가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5% 세율 적용</td><td>기타소득</td></tr>
</table>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비교]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연금계좌)은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많이 혼동되지만, 납입·수령시의 세제혜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통해 형성된 재원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제혜택과 소득구분 등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연금보험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보험계약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시에는 별도 세제상의 혜택이 없으며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금보험료 납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연금보험과 달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요건 및 기준에 의해서만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취급이 가능하다.

구분	연금보험	연금저축
취급기관	생명보험회사	모든 금융기관
소득구분	이자소득	연금소득
세제혜택 적용요건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충족 필요	보험료 납입 및 인출요건 충족 필요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없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연령별 3~5% 세율 적용)

4.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가구 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청자가 다음의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 과세기간	2014.1.1.~ 2014.12.31	2015.1.1.~ 2015.12.31	2016.1.1.~ 2016.12.31	2017.1.1. 이후
연령	60세 이상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② 총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을 의미하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1,300만워	2,100만원	2,500만원

③ 재산 요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④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간 최대 77~230만원(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5월에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및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된다. 다만,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한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후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의 부적격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게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적격 수급으로 확인된 근로장려금은 전액 추징되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5.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 제도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다만,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 비교]

<table>
<tr><th>구분</th><th>근로장려금</th><th>자녀장려금</th></tr>
<tr><td>가구원
요건</td><td>•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음
– 배우자가 있음
(부양자녀 없어도 가능)
– 만 40세 이상인 자
(부양자녀, 배우자가 없어도 가능)
※ 소득세 과세기간이 2016년인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 2017년 이후는 30세 이상</td><td>• 1가지 유형만 신청가능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음</td></tr>
<tr><td>소득
요건</td><td>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1가구 전원의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
<tr><th>단독
가구</th><th>홑벌이
가족가구</th><th>맞벌이
가족가구</th></tr>
<tr><td>1,300만원</td><td>2,100만원</td><td>2,500만원</td></tr>
</table></td><td>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td></tr>
<tr><td>재산
요건</td><td>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td><td>(좌 동)</td></tr>
<tr><td>신청
제외자</td><td>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td><td>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td></tr>
</table>

제 8 장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이란 납세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수록된 문서를 말한다. 그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시행근거와 납세자권리헌장에 담을 주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세무조사)
②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 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도 등과 같이 특별히 성실성 추정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중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⑤ 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⑥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⑦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재경정하는 경우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성을 도모하고, 세무조사의 과학화 및 합리화를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세관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조사를 받고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라.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그러나 세무공무원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마.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②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③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바. 세무조사 기간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여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②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⑤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억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이처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위의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①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③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④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⑤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처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 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사.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이처럼 세무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 장부·서류 보관 금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 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경우 및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카. 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⑥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⑦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⑧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위 ①, ② 및 ⑤부터 ⑧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하며,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파. 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

하. 납세자보호위원회

다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①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다만,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③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④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⑤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⑥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의 ④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세금고충 수용 여부,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여부 등에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관서(국세청 제외)에 설치되어 있다.

2.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내지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한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세부과처분이 있는 후에는 경정청구나, 국세심사·심판청구를 하게 되고, 이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익을 구제받게 된다. 이러한 사후적 권리구제는 납세자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권리의 구제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조세의 부과처분 전에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구제하기 위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이며, 과세관청도 조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하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납기전 징수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대상이 되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 제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편,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해야 한다.

그 취지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서를 받은 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뜻이 없는 경우에도 청구기간(30일) 중에는 과세처분이 유보되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경정이 이루어지면 그 기간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결정은 아래의 하나로 한다.

①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
②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음
③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

다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청구가 결정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위한 국세심사위원회는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며, 각 관할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각 관할 세무공무원과 기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를 위원으로 하여 동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조세구제제도

조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적법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이것을 조세구제제도 또는 조세쟁송제도라고 한다.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에 의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1심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불복청구인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그 결정을 받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는 2심급이 된다.

나. 감사원법에 따른 불복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는 그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원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처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행정심급은 1심급이 된다.

다. 행정소송

국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해 사법부의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국세행정 불복절차에 따른 행정청 자신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국세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한다.

국세에 관한 불복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그 대신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에 관한 행정쟁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은 일반행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는 임의적·선택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국세행정상 분쟁에 관하여 필요한 국세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는 ①일차적으로 행정청에 대해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②조세에 대한 처분이 대량적·반복적이기 때문에 모든 다툼을 법원에 제기한다면 법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덜어주며, ③조세행정상 처분은 전문적·기술적이기 때문에 행정청 자체의 전심절차를 통하여 그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 불복청구 기간 및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국세기본법, 감사원법에 따른 불복 및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청구의 기간,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기관 및 결정기간은 아래와 같다.

[조세구제제도]

